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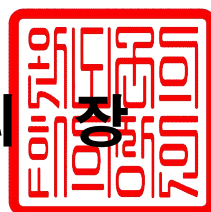
완도군의회 공고 제2023 - 27호

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「완도군 수목원·정원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7월 7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발 의 자 : 박재선 의원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·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적용범위와 책무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사업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수목원·정원 전문가 활용(안 제6조)

5. 관련법령 :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7. 7. ~ 2023. 7. 12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5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수목원·정원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--

「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·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목원”이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·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,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“정원”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수목원·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

수 있는 수목원·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군민과 완도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·정원을 조성·운영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은 수목원·정원의 이용 및 조성·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수목원·정원의 조성·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 조례에서 “조성·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·정원식물의 수집·증식·보존·복원 및 전시
2. 품종개발 및 보급, 학술적·산업적 조사 및 연구
3. 자연학습, 국·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
4. 코디네이터,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 등 경영 활성화
5. 수목원·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
6.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·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조성·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

으며,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,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.

제6조(수목원·정원 전문가 활용) ① 군수는 조성·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·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·정원 전문가를 선발·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·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,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·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 및 안내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·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·정원에 대해서는 군보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민,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·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·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, 간행물 등에 수목원·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·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수목원·정원은 군수의 지도·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군수

는 제1항의 확인·검사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조성·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- 제7조(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) ① 시·도지사는 수목원(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,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
 2.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⑥ 시·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⑦ 시·도지사는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⑧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⑨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등록) ① 수목원(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)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,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·관리·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.

1. 수목원의 명칭
2. 수목원의 소재지
3.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·주소
4. 수목원의 시설명세서
5.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
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, 수목유전자원,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